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약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신청범위 (필요 시 별지 사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인력, 검사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 안전성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수수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